

「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9월 5일, 이은미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은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책무(안 제3조)
- 3) 지원대상, 방법, 내용,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~ 제7조)
- 4)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업무 대행 규정(안 제8조)
- 5) 지도·감독 및 환수에 대한 규정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무연고사망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가 가능하도록 장례를 위한 공공의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,

○ 공영장례 지원 대상, 범위, 신청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하고, 대행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지도·감독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.

○ 가족 해체,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, 상위법인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‘무연고사망자의 처리’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됨에 따라, 기존에 무빈소 직장(直葬) 방식에서 빈소 설치 및 장례의식 의무화,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며 고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장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.

○ 검토결과,
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